

제 535 호

1975.12.3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002 호	서울특별시 도로검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	3
제 1003 호	서울특별시오물수거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6
제 1004 호	서울특별시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	7

◎ 규 칙

제 1545 호	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 징수조례시행	
	규칙중개정규칙.....	10

◎ 공 고

제 309 호	이수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변경인가	
	(기간연기).....	13
제 31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3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도르점용로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구자춘 인

1975년 12월 31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1002 호

서울특별시도르점용로징수
조례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도르점용로 징수조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로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점용로의부과대상) 도로점용로
(이하 "점용로"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제 24 조 제
5 항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건설 계속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사용자에게
부과한다.

제 3 조 (점용로의 산정기준) ①점용로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로는 최대년도별로 년액으로
산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
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제 1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로를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
는 달의 점용일수가 15 일 이하인
경우에는 2 분의 1 월로, 15 일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1 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달의 점용일수
의 합계가 1 달미만인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④점용로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평방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 평방미터 미만의 우수리가 있는
경우 0.5 평방미터 이상은 1 평방미터
로하고, 0.5 평방미터만은 이를 결사
한다. 다만, 전체점용 면적이 0.5
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
평방미터로 한다.

⑤점용로의 산정에 있어서 인근
토지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 80 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p>제4조 (점용료의 감면) 도로의 점용이 공용토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제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 달성이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에 규정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p> <p>제7조 (징수의 위임) ①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5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지방회계법 한 년도분은 그 해가시 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년 도 3월내에 징수한다.</p> <p>②점용기간이 1년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제 731호 (72. 9. 30)에 의한 주차장의 사용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가 제정 시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p>
<p>제6조 (징수) ①점용료의 징수는 점용 허가시 발부된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p> <p>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p>	<p>제 731 호 (72. 9. 30)에 의한 주차장의 사용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가 제정 시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p>

<별표> 점 용 로 산 정 기 준 표	
구 분	산 정 방 법
1. 전기통신설비 및 전선로와 이들의 지지물 및 그 지지물에 유사한 공작물설치를 위한 점용	1. 점용면적에 인근토지 가격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주인 경우 1주당 단주인 때에는 300원, 8주인 때에는 500원, 철탑인 때에는 600원으로 하며 표지하인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인근토지 가격의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수도관, 하수도관, 배수관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1. 점용면적에 인근토지 가격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3. 광고탑, 광고판과 이들에 유사한 물건의 설치를 위한 점용	1. 표시면적에 인근토지 가격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4.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처리장, 휴게소 및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1. 점용면적에 인근토지 가격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5. 철도궤도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1. 점용면적에 인근토지 가격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6. 지하도 지하실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1. 점용면적에 인근토지 가격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지하도 등에 첨가된 물건은 점용면적(또는 표시면적)에 인근토지 가격의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7. 전각호에 계기된것 이외에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을 위한 점용.	1. 점용면적에 인근토지 가격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주택인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인근토지 가격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비 고>

- 1. 1항의 적용물건에는 전주, 전화주, 우편함, 기타 주류를 포함한다.
- 2. 3항의 적용물건에는 광고탑 일시적인 광고막류 아취식 공작물 노상 입간판류등을 포함한다.
- 3. 6항의 첨가된 물건이란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직접적인 장애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 4. 7항의 적용물건에는 노점, 각종 공작물 및 건축물 식물재배를 위한 전용을 포함한다.
- 5. 지표이하란 도로부지의 노면하를 말한다.
- 6. 표시면적이란 광고탑 또는 광고판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광고판의 경우에는 주된 광고의 1면만을 산정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로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5년 12월 31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1003 호

서울특별시오물수거수수로징수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로 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 (징수) ①오물수거수수로는 청
소의무자로 부터 징수한다.

②쓰레기 수거수수로는 가옥단위로
징수하고, 분뇨수거수수로는 종량에
의거 징수한다.

③기의 중도에 제 5 조의 2 의 규정
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납입의
무가 발생된자에 대하여는 발생한
달로부터 월할로서 징수한다.

④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월을 한도로 오
물수거 수수로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오물수거수수로 징수방법 및 납

<p>-기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중 분노수거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부 칙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종	별	기	금
분	노	18 리터당	50 원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구자춘 인 1975년 12월 31일</p> <p>◎서울특별시조례제 1004 호</p> <p>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26 조 및 동법 제 128 조의 규정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p> <p>제 2 조 (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 3 조 (종류및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과 같이 한다</p> <p>제 4 조 (공부열람의 제한) 전조별표중</p>		<p>제 35 호 및 제 40 호의 공부도면대 장등은 동종의 열람에 공하여도 지장이 없는것에 한한다.</p> <p>제 5 조 (2 통이상수수료) 제 3 조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것을 2 통이상 청구할때에는 1 통마다 1건 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p> <p>제 6 조 (수수료외감면) 다음 각호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공서의 청구에 의한 2. 시장이 수수료납부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하는때 <p>제 7 조 (징수 기) ①수수료는 증명또 는 열람을 청구할때에 그 청구자 로 부터 징수한다.</p> <p>②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 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p> <p>부 칙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별 표>		
수 수 료 징 수 사 항	수 량	수 수 료
1. 세목별 납세 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 증명	1 건	200 원
2. 시세 환납 증명 또는 미과세 증명	1 건	200 원
3. 재산세 과세 증명	1 건	200 원
4. 원천 과세 공제 증명	1 건	200 원
5. 재산 평가 조서	1 건	200 원
6. 가옥 대장 농본	1 건	200 원
7. 가옥 대장 무한 증명	1 건	200 원
8.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준공 검사 증명	1 건	200 원
9. 지적 공부상 미등재 증명	1 건	200 원
10. 지적 공부 정리 완료 확인원	1 건	200 원
11. 철거 사실 증명	1 건	200 원
12. 시영 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1 건	200 원
13. 두허가 전 불 확인원	1 건	200 원
14.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	1 건	200 원
15. 자동차 세 증명	1 건	200 원
16. 건축대지 증명	1 필지	200 원
17. 환지 증명 또는 판지에 정지 증명	1 필지	300 원
18. 불불 납불 실적 증명	1 건	200 원
19. 공사 준공 기술 용역 및 공사 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원	1 건	200 원
20. 일반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증명	1 건	200 원
21. 공장 등록 증명	1 건	200 원

수 수 로 징 수 사 항	수 량	수수료
22. 생산실적증명	1 건	200 원
23. 경력 (재직, 퇴직) 증명	1 건	200 원
24.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무전인 지정증명	1 건	200 원
25. 행정구역 명칭 변경 증명	1 건	200 원
26. 주민등록신고 확인원	1 건	200 원
27. 주소증명	1 건	200 원
28. 병적증명	1 건	50 원
29. 향도예비군 편성확인원	1 건	200 원
30. 인감증명	1 건	50 원
31. 자산에 관한 증명	1 건	200 원
32. 매장 화장에 관한 증명	1 건	200 원
33. 가옥대장 및 기타 공부도면의 열람	1 회	200 원
34. 공부의 등본·초본 하부 원본	1 장	200 원
35. 토지건물의 도본 등본 하부원본	1 자	200 원
36. 재산관리인과 파산관리에 관한 증명	1 건	200 원
37. 과세불전에 관한 감찰제교부	1 건	200 원
38. 경계명시측량 (도로·구거의 경계선·계획선·건축 측량선)	1 필	3,600 원
39. 환지분할원	1 필	200 원
40. 체미지분할신청	1 필	200 원
41. 환지에정지 분할신청	1 필	200 원
42. 국제결혼신고	1 건	2,000 원
43. 납품 또는 공사시공 실적증명	1 건	200 원

수 수 로 징 수 사 랑	수 량	수수료
44. 실수요자증명	1 건	200 원
45. 수출 또는 군납용 원자재재고확인	1 건	200 원
46. 소요량증명 (신규품목)	1 건	200 원
47. 소요량증명 (기책점품목)	1 건	200 원
48. 공업용요소 및 실수요자증명	1 건	200 원
49. 중소기업체확인원	1 건	200 원
50. 공장저당법 제7 조증명	1 건	200 원
51. 시설보유증명	1 건	200 원
52. 원자재 (시설재) 증명	1 건	200 원
53. 보상금지불증명	1 건	200 원
54. 표준주택설계도서	1 건	1,000 원
55. (식품, 환경) 영업허가 (휴, 폐업) 사실증명	1 건	200 원
56. 마약재고량증명	1 건	200 원
57. 기타 공부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1 건	200 원

규 칙

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 징수조
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장
1975년 12월 31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545 호

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 징수
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11 조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쓰레기수거수수료의 조정결의를 위한 조정명세서는 별지제9호서식에 의하여 일반가정에 있어서는 월활동급에 따라 기별로, 영업에 있어서는 월활동급에 따라 논기별로, 다량에 있어서는 수거량집계표에 의하여 월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중 "영업쓰레기수거수수는 매월 말일 까지"를 "영업쓰레기수거수수는 납기 개시 10일전 까지"로 한다.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구청장 및 동장은 쓰레기수거수수료의 조정결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쓰레기수거수수료 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 납기 및 고지서 발부기간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의 일반가정쓰레기 수거수수료 고지서는 별지제18호서식에 의하고 영업 및 다량쓰레기수거수

수로 고지서는 별지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 제1항중 "다량쓰레기수거수수료"를 "영업및 다량쓰레기수거수수료"로 한다.

제21조 제1항중 "일반가정 및 영업쓰레기"를 "일반가정쓰레기"로 하고 동조제3항중 "다량쓰레기및 다량분뇨"를 "영업및 다량쓰레기와 다량분뇨"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다량쓰레기 및 다량분뇨"를 "영업및 다량쓰레기와 다량분뇨"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송달증 및 납일 고지서의 송목상 "(일반가정·영업)"을 "(일반가정)"으로 한다.

별지제19호서식 제목 "다량오물수거수수료고지서"를 "영업쓰레기 및 다량오물수거수수료고지서"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쓰레기수거수수료종별 납기 및 고지서 발부기간

종 별	기 분	납 부 기 간	고 지 서 발 부 기 간
일 반 가 정	1기 (11.1-4.31)	5. 1 ~ 5.31	4.16 ~ 4.20
	2기 (5.1-10.31)	11. 1 ~ 11.30	10.16 ~ 10.20
영 업	1기 (11.1-1.31)	2.16 ~ 2월말일	2.1 ~ 2.10
	2기 (2.1-4.30)	5.16 ~ 5.31	5. 1 ~ 5.10
	3기 (5.1-7.31)	8.16 ~ 8.31	8. 1 ~ 8.10
	4기 (8.1-10.31)	11.16 ~ 11.30	11. 1 ~ 11.10
다 량	매 월	익월 16일 - 말일	익월 1일 - 10일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309 호

이수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인가
(기간 연 기)

건설부공고제 12 호 (72.2.18) 로
사업시행인가된 이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13 조 및 제 31 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인가 (기간
연기) 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1975.12.30

서울특별시장

다 음

1. 변경사항 (사업시행기간)

지구명 : 이수지구

당초시행기간 : 72.2.18 - 75.12.31

변경시행기간 : 72.2.18 - 76.12.31

비 고 : 1 년

2. 기 타 : 관계도서는 이수토지구
획정리조합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

(관계도서성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310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

계 획 공 랑 공 고

1. 건설부고시 제 186 호 (62.12.

20) 로 고시된 창신 2 동전입로

확장공사구간내의 저촉되는 노지

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

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

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

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노복과에

비치하고 노지 및 전술의 소유

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

다.

1975.12. .

서울특별시장

공람개요

1. 사업시행의 위치

종로구 창신 2 동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p>창설 2 등 전임로 확장 공사</p> <p>3. 사업의 규모</p> <p>(1) B = 6m ~ 8m</p> <p>(2) L = 670 m</p> <p>4. 사업의 시행자</p> <p>서울특별시</p>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p> <p>75.12.1 ~ 75.12.31</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p> <p>별첨 토지 조서</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p> <p>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p> <p>관계인 주소, 성명</p> <p>별 첨</p>
---	--